

영등포구의회
제181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
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이재형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4. 4. 11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
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99호로 2014년 4월 8일 이재형 의원외 6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회적경제,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나.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다.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10조)
- 라.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
- 마. 사회적경제 육성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2조)
- 바.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, 재정, 우선구매 촉진, 구세
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 ~ 제16조)
- 사.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
규정함(안 제17조 및 제18조)
- 아.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따른 구청장의 지도·감독에 관한
사항을 규정함(안 제19조)
- 자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
폐지함(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합 의 : 일자리정책과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및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10조(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)에 따라 개별법령 등에 근거하여, 우리구에서 제정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2013년 「마을기업」 육성 시행지침(안전행정부)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를 지원하기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5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·시행함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

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2조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3조 및 제14조, 안 제18조에서는 경영지원, 교육훈련 지원, 재정지원,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5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구매와 구세감면, 민간기업,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경제 활동의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, 일자리 창출, 지역사회의 공헌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진 유사한 성격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역을 마을기업, 자활기업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 등을 수립·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최근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등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, 유사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합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

하다고 사료되며,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.

- 참고로 2014년 3월 31일 기준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사회적 경제조직은 총 118개소 임.

【사회적경제조직 현황(2014. 3.31 현재)】

계	(예비)사회적기업	협동조합	마을기업	자활기업
118	33	74	4	7

참 고 자 료

1 사회적기업 육성법

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·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.

2 협동조합 기본법

제10조(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)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,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